소비자법연구 게재신청 및 원고작성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논문 작성 방법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

제2조(투고 자격) 소비자법연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저자가 복수인 때에는 공저자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변호사 등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비자법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

제3조(투고 방법) ① 저자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법연구 논문 공모시에 제시된 바에 따라 논문 게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논문게재신청서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논문에 성명, 소속,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법연구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4회 발간하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원칙적으로 발간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투고하여야 한다.

제4조(투고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소비자법과 관련이 없는 논문

2. 기존 학술지 또는 기관지 등에 게재된 논문.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학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 논문

② 논문 심사 중에 전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중복 투고) ① 저자는 소비자법연구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학술지에 투고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다만,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의 투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접수일) 접수일은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논문이 접수된 날로 한다.

제7조(투고 철회) 저자는 논문이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되기 전까지는 투고를 철회할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방법

제8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저자는 한글(hwp) 프로그램 또는 MS워드(word) 프로그램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③ 논문은 제목, 저자, 국문 초록, 목차(Ⅰ. 제목만 기재),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국문 초록 및 외국어 초록에 각각 해당 언어로 5개 내외의 주제어를 표기해야한다.

⑤ 논문 분량은 A4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편집 용지) 편집 용지의 여백 및 글자 크기는 한글(hwp)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와 아래 여백 : 각각 20

2. 왼쪽과 오른쪽 여백 : 각각 20

3. 머리말과 꼬리말 : 각각 15

4. 줄 간격 : 160

5. 글자 크기 : 본문의 큰 제목 12, 본문 내용 10

제10조(본문 제목) ① 논문 본문의 제목은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시한다.

② 표와 그림 제목은 <표-1> [그림-1] 등으로 표시하며, 표와 그림 위에 둔다. 자료의 출처는 표나 그림 아래 부분 또는 각주로 표기한다.

제11조(각주 및 참고문헌) ① 각주(footnote)는 해당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 하단에 기술한다.

② 각주의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에 따른다.

1. 학술지(정기간행물)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년월, 해당면.

2. 기념논문집 논문 : 저자, “논문명”, ｢기념논문지명｣, 발행년월, 해당면.

3.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출판사, 출판년도, 해당면.

4. 외국 문헌 : 국내문헌과 동일 또는 유사

③ 참고문헌의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 또는 한문 인명은 ‘제1저자명 외’로, 외국 인명은 ‘제1저자 last name, et al.’로 표기한다.

④ 참고문헌은 본문 마지막에 페이지를 다르게 하여 기술하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과 참고문헌 목록은 일치해야 한다.

⑤ 참고문헌의 기술 순서는 국내문헌, 국외문헌 순으로 하며, 저자명에 따라 국어는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는 그 나라의 글자 순으로 한다.

제12조(초록) ① 국문 초록은 저자 다음에 첨부하고,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첨부한다.

② 초록의 분량은 국문 초록의 경우 500자 이상, 외국어 초록의 경우 1,000자 이상으로 한다.

③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 및 외국어 초록 하단에 해당 언어로 기술한다.

제13조(저작권의 이용)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신청을 함으로써 소비자법연구에 게재한 본인의 논문에 대하여 학회 및 학회가 승낙한 제3자가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